의안번호	제248호
의결연월일	2005.10.21

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10. 10 예 산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2005. 10. 11다. 상정일자 : 2005. 10. 18

제126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# 2. 제안설명요지(재무과장 : 고영세)

#### 가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
 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, 예산군공유재
 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(단위: m², 천원)

7		분	당 초			변경		
			건수	수 량	추정가액	건수	수 량	추정가액
취	계	토지	25	95,104	367,532	39	10,441	872,767
		건물	4	3,350	3,100,000	4	3,350	3,100,000
		기타	1	5	128,943	1	5	128,943
	매입	토지	25	95,104	367,532	39	10,441	872,767
		건물	4	3,350	3,100,000	4	3,350	3,100,000
		기타	1	5	128,943	1	5	128,943
	교환	토지						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처 분	계	토지				5	1,558	134,308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	매각	토지				5	1,558	134,308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	교환	토지						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정낙춘)

-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규 재산취득 부지 8필지 3,477㎡와
  변경 재산취득부지 10필지 5,388㎡, 그리고 재산취득 취소부지 4필지 2,528㎡
  와 재산처분부지 5필지 1,558㎡로 총 9필지 4,779㎡가 증가한 변경안 임.
- 신규 재산취득부지 8필지 3,477㎡로 이중
  -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부지 5필지 3,265㎡는 보조경기장 건축비의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환경정비 위해 금회에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- 공립보육시설 신축 진입로 부지 3필지 212㎡는 신축 예정지가 지난 9월 중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진입로 부지매입 계획으로 타당의견입니다.
- 변경 재산취득 부지 10필지 5,388㎡는 추사기념관의 당초 건립 예정지가 현상변경 심의시 문화재 주변 경관보존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금회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.
- <u>재산취득 취소부지 4필지 2,528㎡는</u> 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로 활용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무리한 보상요구로 매입을 취소함.
- o 재산처분부지 5필지 1,558㎡로 이중
  - 신양면 소재 시장내 대부토지 3필지 819㎡는 지난 1981년 이전부터 사용 해 왔던 토지로 매각시 관계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
  - 고덕면 소재 시장내 대부토지 2필지 739㎡는 지난해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된 바 있으며, 이후 보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.
  -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와 관계 부서 와의 사전협의, 그리고 매입 또는 매각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충분하게 이행하여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이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읍·면 재래시장의 대부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예산읍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5일마다 개장되는 5일장이 유명무실화 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재새시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매각계획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4. 질의·답변요지

생 략

5. 토 론 요 지

없 음

6. 심 사 결 과

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